

# 제 2 주제

민선5기 충남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방안

유 병 선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 민선5기 충남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방안

유 병 선 |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 1. 서론

한국에서 지방에 정치가 존재하는가? 지방정치는 이론적으로 1991년에 부활한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방에서의 정치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만이 존재하는 듯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된 집행부로의 권력집중현상이다. 이러한 구도는 단체장을 견제할만한 세력이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행정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세력을 키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합의제이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라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및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의민주제를 근간으로 하고 직접참정제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추세이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고,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를 찬반의 주민투표로 대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일부 단체장과 공무원들 중에 지방의회가 무력화될수록 양기관간의 갈등이 줄고, 또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여서 전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역할이 생략된 자치행정은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중국에는 주민들의 저항을 자초해서 자치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아직도 여러 요인에 의해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정치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에 기인한다. 중앙정치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권한과 자의적 권한행사로 인한 자원낭비 및 비효율적 행정과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의 취약성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최봉기 2005, 6). 나아가 지방의회의 제도적인 한계, 지방의원들의 노력 부족,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 부족 및 무관심 등으로 지방의회 무용론 또한 제기될 소지를 제공하기도 한다(김용복 2006, 132).

아무튼 지방의회의 지자체 견제 방법은 사무행정감사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다른 견제기능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이러한 감사도 의원들의 전문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실효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자치단체장의 정당 소속, 의회 내 정당별 의원 분포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이 이루어진 이후 지방의원은 정치적 행보, 특히 공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 소리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쏘(show)에 불과하며, 회의장 밖에서는 단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를 통한 사전조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현장 감사 확대, 즉 지역주민 여론 수렴조사 등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작동되어지고 있으며, 의원들 대다수는 소신을 가지고 본분에 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니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충남도의회가 충남 발전을 위해 추진해 나가야 할 중점과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

## II. 지방의회의 운영의 문제점

### 1. 소극적인 지방분권

우리나라의 지방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용인은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계왕적 대통령의 폐단이 정당정치에서는 보스정치를 낳았고, 정치 무대에서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왔다.

혹자는 지방의원들의 조례발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법 테두리 속에서 제정되어지는 조례는 제한적인 영향력 발휘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의 확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정치의 기본적 토대이다.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다양한 제도적인 개선과 정책을 구사하여 왔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 상황에서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방침만 확정되었을 뿐 추진 시기는 2012년 이후로 미루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결과는 ‘권한 및 재분배’, ‘지방재정 확충’, ‘자치역량 강화’, ‘협력 및 공감대 확산’ 등 4개 분야 20개 과제, 56개 세부항목 가운데 2010년 상반기까지 완료된 항목이 전체의 43%에 불과한 24개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협력 및 공감대 확산’ 분야 11개 전체 세부항목을 비롯해 22개 항목의 추진시한이 모두 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12년 하반기로 설정되어 있다(대전일보 2010/09/30).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그 자신이 지방정부의 수장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 발전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 발전은 요원하게 느껴진다.

### 2. 미약한 지방재정 자립도

돈줄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항상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대전일보 2010/09/24).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에 내년 예산으로 4조 5,700억원을 요청하였는데 이의 95.1%인 4조 3,466억원만 반영되었다. 올해 확보액 4조 4,807억원보다 1,341억원이나 적은 규모이다.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충남도는 국도건설 사업비가 요구액 4,750억원의 절반 정도인 2,474억원만 반영되어 교통망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충남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리고 예산 확보 때문에 중앙정부에 자주 고개를 숙여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3. 지방의원의 전문성 문제

한국의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빈번히 지적되는 것이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일단 선출된 의원에게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특정 위원회를 선택케 하고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장기간 의정활동을 수행케 함으로써 전문성을 키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위원회 위주의 운영을 제도화하고 있다. 즉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그 시행령에서 시·군·자치구의회의 경우 의원정수 13인 이상의 의회에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광역의회는 법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나 기초의회는 위원회 설치에 제한을 받고 있어 전문성 확보의 제한을 받고 있다.

5) 지방자치법 제50조 1항.

6) 지방자치법 제20조 2항.

### III.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방안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개선 외에 근본적으로 한국정치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되어야 한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현 구조 하에서는 지방의 정치는 활성화될 수 없다. 이하 몇 가지 정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적해 보고자 한다.

#### 1.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개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별도의 기관으로 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정부의장인 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대표로 인정하면서 권한 면에서 단체장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보다는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견제와 균형의 입장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불균형한 권한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임시회 및 위원회 개최, 의안제출권, 폭넓은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임명권 등이다. 반면에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 및 결산의 심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집행과정에 대한 질문·질의 등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권한을 넘어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정당정치의 차원에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지방의 정당정치 차원에서 의회정치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진출과 이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의미한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의회를 집하고 있는 다수당과 동일한 정당 출신의 단체장인 경우에는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한 견제의 역할보다 지지의 기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사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실제로 견제와 감시라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단체장이 제안하는 정책이나 의안을 승인하기 위한 '통법부'가 되었으며 '보좌기관'적인 성격에 머물러 왔다. 지역적 정당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시된 지난 5·31 선거의 결과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특히 민선 4기 출범 이후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특정 정당의 압승으로 인해 의회의 견제기능이 사라질 가능성이 우려되어 왔다(김용복 2006, 139).

그러나 올해 치루어진 6.2 지방선거의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 구조가 형성되기도 한 바 이는 지방정치의 활성화 측면에서 관심이 주목되는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 및 성찰적 민주주의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때리기'에서 '지방의회 살리기'로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으며, 협력자 또는 견제자로서의 지방의회를 살려내려는 자치단체장의 노력 또한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집행부 스스로도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협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조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협조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성과관리제도의 시범사업 및 계획, 그리고 실무자의 관심 속에서는 지방의회의 참여와 역할은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2.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선

의회의 견제기관에 대한 견제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세력 및 정당이 지방의회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광역의회의 소선거구제와 기초의회의 '제한된' 중선거구제로는 제1당의 의석집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권력다툼과는 별개로 지역적 정책 논의의 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 지역주민들의 정당선호와 정책선호가 의석에 가능한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김용복 2006, 139).

### 3. 정당의 후보자 공천제도의 개선

정당의 후보자 공천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한국 정당이 보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당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 온 사안이다. 이러한 사당적 구조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정당 보스 한 사람에게 충성함으로써 의원 후보로 지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곽진영 2001, 39). 공천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민주화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정당 조직과 민주화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역으로 정당 조직과 운영방식을 민주화함으로써 지방정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김욱 2007, 12).

### 4. 지방의원 유급제 개선

유급제의 도입이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여가 있었다. 그러나 광역의원과는 달리 기초의원들의 연봉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별다른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유급화된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금지시켜야 하며 그 범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대체로 많은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유급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영리추구 행위를 통해 발생하기 쉬운 비리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김용복 2006, 143). 따라서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한 처벌과 감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고발과 감시행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를 강한 범규정으로 처벌하는 접제도적 개입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유급제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정연정 2007, 83).

현실적으로 지방의정의 수행에는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지방의원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직이 지역사회 유능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보수수준<sup>7)</sup>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열악한 의원보수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송광태 2005, 195).

모 지방의원은 최근 의정활동비 지급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원들이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방의원은 정당에 기여도가 있는 인간관계에 의해 믿을 사람에게 공천권 대부분 행사되어지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 또는 보좌관 출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런데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 애경사 챙기기는 데에 고충을 겪어 대부분의 의원이 마음의 병이 생겼다고 한다. 초창기에는 “나도 직업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나 결국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 일단 먹고 살게 해 주고 정치를 하고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치적 노력의 필요성과 학계의 지원 등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 5. 지방의원의 노력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도덕성 해이 등으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방의원의 도덕성 시비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왔다. 지방의회의 행태적 요인으로 ‘지방의원의 출신지역구 이익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지방의원의 권위적 태도와 신분 남용’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박천오·서우선 2004, 107-24). 지방의회의 전문성 혹은 정보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정보공유의 확대와 주요 사안에 대한 사전협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정책심사의 실효성을 거두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정책적 능력을 제고시키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후보자의 자격요건 강화, 정당공천제의 폐지, 지원체제의 보강, 의정활동 평가체제의 구축, 지방의원들에 대한 비판과 평가기능의 강화 등이 제기되어 왔다(최봉기 2005). 결국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의원 개인

7) 지방의원에 대한 개인지급정비는 2004년 이후부터 전국 평균적으로 광역의원은 월 230만원(연 2,760만원), 기초의원은 월 157만원(연 1,884만원)이다.

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연수 및 교육방안과 의원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지원체제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유급보좌관 제도가 고려되고 있지만, 이는 그 비용을 고려할 때 그다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여 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원 당 1명씩 지원되는 보좌관제도는 정책능력의 개발보다는 의원들을 수발하는 비서관의 역할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위원제도의 상설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의석율에 따라 정당에 전문위원을 배정하고, 지방의원들은 전문위원들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정책개발과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복 2006, 143).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교육 및 토론의 장을 만들어냄으로써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하며, 성과에 따른 예산의 추가 배정과 같은 성과관리의 기본 유인구조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협조를 도출해 내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의원보좌관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처의 기능은 도의회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의회사무처의 기능 강화는 직인 수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회의 「보좌지원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의회 자료실의 보강도 필요하다. 도의회의 정책보좌기능의 일환으로서 현재 도의회의 자료실을 「의회 정보관」 수준으로 대폭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실은 집행부에도 있으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자료실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 IV. 결론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정 연구단체나 자문위원회의 구성보다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치유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이젠 과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병존시킬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 대안으로는 기초의회를 폐지하여 광역의회 의원이 기초의회 의원을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과 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동일한 생활권인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 한해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된 있다(최병대 2004, 74).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지방의회의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발전을 고려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지방의 정치구도는 재편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지방의 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노력보다는 정치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의원들 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지방발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지방은 치밀하게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를 개발해서 대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충남도지사와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으나, 국회의원, 도의원들 역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충청권의 정치적 지세가 전국 단위에서 볼 때 열세에 있다. 지역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힘을 합쳐야 한다.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질 수 있다. 2007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착공식을 개최하여 지금까지 38개월이 경과했으나 세종시 수정안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1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2010세계대박제전 개막식에서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계획이 변경 또는 축소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행정도시건설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5월말 기준으로 총 공사비 15조 4,000억원 중 1조 900억원을 집행, 총 공사비의 7.08%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공사기간이 2007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00개월인

것을 감안할 때 38개월이 지났다. 공사의 38%의 진척이 있었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의 여론을 하나로 모아 원활한 행복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한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sup>8)</sup>

충남도의회는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도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는 정당과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곽진영. 2001. “한국정당체계의 민주화: 정당-국가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편. 『의정연구』 제7권 제1호.
- 김용복. 2006. 11. 3. “5·31 지방선거와 지방의회 발전방안 연구.” 한국지방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자료집.
- 김 옥. 2007.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그리고 정당.”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창간호.
- 박천오·서우선. 2004.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간 개선방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 제38권 4호.
- 송광태. 2005. “지방의회 운영의 실태를 통해본 쟁점과 개선방안.” 열린우리당지방자치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 결과보고서』 .
- 안광현. 2009. 10.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문제점.” 대한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정연정. 2007. “유급제 도입의 지방의회: 도입과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창간호.
- 최병대. 2004.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방안: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회직렬 신설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 .
- 최봉기. 2005.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17권 1호.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8. 『한국지방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 최근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 민)이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인 세종시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세종시 정상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